

하는 행정정보

한편 행정기관의 전산화는 별도의 보안대책(내부통제제도)이 긴요한 바 “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요구되는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 하도록 하고 있다.(26조①)

대민서비스의 전자화와 관련하여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문서, 서면, 서류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1조)

둘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당해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구축등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32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등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민원인의 신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전자서명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3조)

셋째,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에서

고지서, 통지서등의 종이문서로 고지, 통지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이를 전자공문서로 고지, 통지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4조)

넷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관련법령,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처리기준표등 민원관련정보 그 밖에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고있다.(35조)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과세표준신고서등의 전자신고제도(국세기본법 5조의2)는 위와 같은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조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도는 국세분야에 우선적용되도록 입법되었으나 지방세에도 적용가능할 수 있는 법률적 및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문서업무의 감축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당해 기관이 취득, 작성, 유통, 보관하는 종이문서등을 최대한 감축하도록 하고 있으며(37조) 이를 위해 문서업무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38조, 39조) 문서업무감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41조)

1. 의사결정과정의 쇄신과 전자화